

의안 번호	제1호
의 결 년 월 일	2011. 7. 28.(목) (제 1 회)

의
결
사
항

**국가지식재산위원회
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(안)**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제출자	국무총리실장 임채민
제출 년 월 일	2011. 7. 28.(목)

1. 의결주문

- '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(안)'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(법률 제10629호, 2011. 5. 19. 공포, 2011. 7. 20. 시행) 및 「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3036호, 2011. 7. 19. 공포 및 시행)에 근거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,
-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 및 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」을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 골자

□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고, 위원회 산하에 실무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를 둠
- (직무대행)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, 정부위원 규정 순위(시행령 제4조)에 따라 직무를 대행
- (간사) 위원회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수행토록 함
- (서면의결)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함

□ 산하 위원회 및 운영

①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, 부처간 이견 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·운영 (의결 기능 없음)
- (위원장) 국무차장, (위원) 당연직 위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(간사)으로 구성*

* 필요시 전문위원,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

②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지식재산 창출·보호·활용·기반, 신지식재산 5개 분야 설치
- 월1회 회의 개최 원칙, 전문위원장* 임기는 1년으로 함

*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위촉하며,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임명

* 전문위원 임기 2년(시행령 제6조)

③ 특별전문위원회* 구성

-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사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

* 지식재산 정책 관련 긴급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 필요시 한시적 구성·운영(시행령 제6조)

④ 위원 참여 및 활동 방향

- 간담회 참여, 기업·지역 현장 방문, 외국 정부·국제기구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들이 지식재산 전도사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

□ 기타 사항

-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참석 가능(대리 출석자도 의결권 가짐)
-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위원이 특별한 사유 발생 또는 불성실한 태도 등의 경우 해촉 가능

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(안)

2011. 7. 28.

국무총리실



목 차



I. 위원회 출범 의의 및 기능	1
II.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	2
1. 위원회 및 사무기구	2
2. 실무운영위원회	4
3. 전문위원회	5
4. 특별전문위원회	6
5. 위원 참여 및 활동 방향	7
III. 향후 추진 계획	9
<붙임1> 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(안)」 주요내용 ...	10
<붙임2> 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(안)」	12

I

위원회 출범 의의 및 기능

- (국가전략 수립) 창의성과 지식재산을 활용, 쏠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, 국가의 지식 Capital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필요
 - 세계 경제는 유형자산(토지·노동·자본 등) 위주의 산업시대를 넘어 무형자산(특허·저작권·디자인 등)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
 - * Apple사의 무형자산 가치는 194조 원으로 시가총액(215조 원)의 90% 차지
 -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 노동과 자본 투입이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, 요소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 표출
 - * 잠재성장률 추이: 6% 중반('90년대) → 4% 중반('00년대) → 4.3%('10년대)
- (기획·조정)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·조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기능 수행
 - 지식재산 정책을 다수 부처*에서 분산·추진함으로써, 총괄·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비효율 증가
 - * 산업재산권(특허청), 저작권(문화부), 신식품종(농식품부), 연구개발(국과위) 등
 - 선진국은 10여년 전부터 국가수반 중심의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 추진
 - * 美國(백악관에 지식재산정책조정관 설치, '08), 日本(지적재산전략본부(본부장: 총리) 설치, '02) 등

<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심의·조정 >

- ◆ 지식재산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, 추진상황의 점검·평가
- ◆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수립
- ◆ 지식재산 창출·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입안
- ◆ 지식재산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,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 등

II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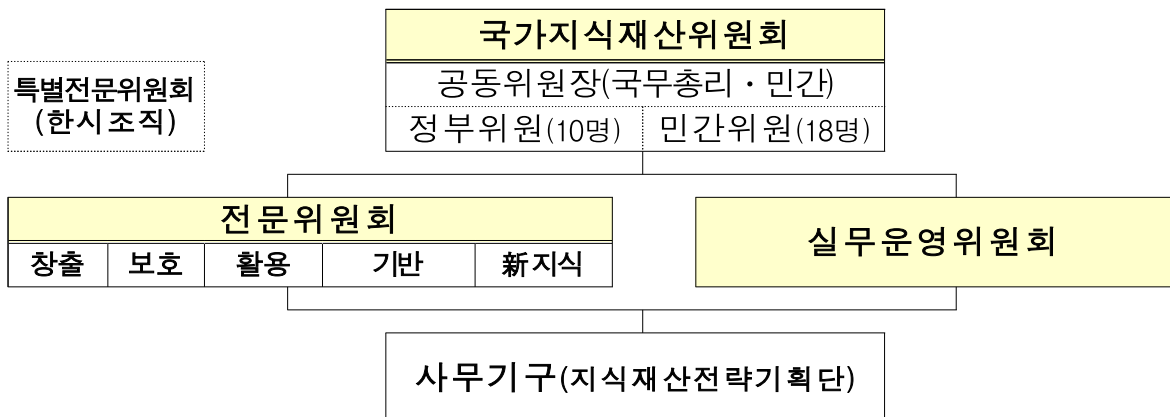
1 위원회 및 사무기구

□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(대통령 소속,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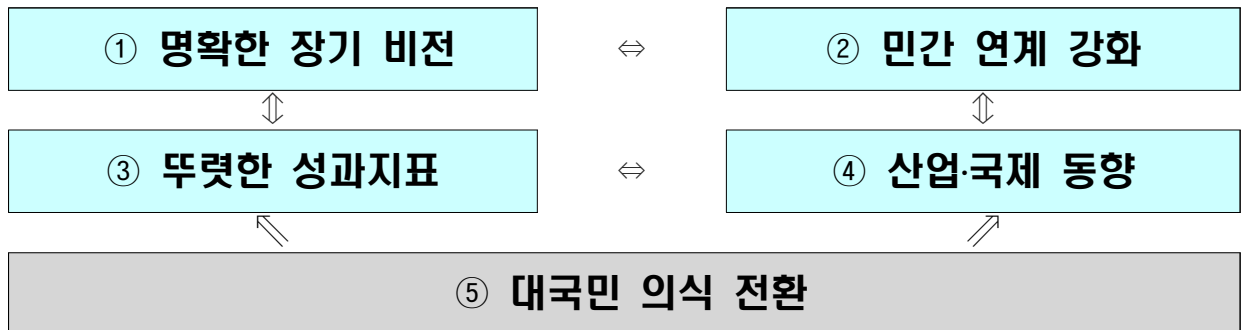
- (위원장)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(民官 공동위원장 체제)
- (정부 위원)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0명
* 간사 : 국무총리실장
- (민간 위원) 각계 지도층 인사로서,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미래 지식 재산 분야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18명(대통령 위촉)

정부 위원 (10명)	민간 위원 (18명)
· 재정부, 교과부, 외교부, 문화부, 지경부 장관, 국무총리실장, 국정원장, 국과위원장, 공정거래 위원장, 특허청장	· 産 · 學 · 研, 법조계, 문화 · 언론계 등

- (산하 위원회)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안전 검토를 위해 실무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, 특별전문위원회 등 구성
- (사무기구) 위원회 활동 지원, 지식재산 정책 총괄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사무기구(지식재산전략기획단) 설치



□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 방안



① (비전 제시)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명확한 장기 비전 및 Road-map 제시

* 매년 “한국의 지식재산 선진화를 위한 제언”을 수립해 발표토록 추진

② (민간 연계)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, 지식재산에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해 해결·제안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

* 민간이 참여하는 “지식재산포럼”을 상시 운영하고, 전문위원회(5개 분야, 최대 75명) 중심으로 정책 현안을 활발히 논의

⇒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서 適時 대응

③ (성과 지표) 주요 분야별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효과를 점검·평가하고,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토록 운영

④ (동향 파악)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, 미국, 일본, 중국 등의 전략 추진 상황 및 산업·경제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

⑤ (인식 제고) CEO, 연구자,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함

□ 향후 추진 일정

○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12~16) 수립 : 9월 중 (제2차 회의)

○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: 12월 중 (제3차 회의)

* 전문위원회 구성,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방안(9월), 지식재산 정책 포럼 개최(11월) 등

2

실무운영위원회

□ (의의)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, 부처간 이견 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

□ 구 성

○ 위원장 : 국무차장

○ 위 원 : 위원회 위원 소속 부처의 고위공무원(실장급)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 구성

* 간사 :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

□ 운 영

○ 위원회 안건 사전 협의·조정

- 위원회 회의 개최 前 개최(분기별) 원칙

- 실무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본위원회에 보고

○ 지식재산 정책 현안 논의

- 지식재산 정책 현안 검토·협의 필요시 수시 개최

- 정책 검토 결과 및 대안은 관련 부처 및 위원회 정책 수립 시 반영

- 특정 분야 또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 들을 수 있음

- (의의) 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, 지식재산 주요정책 의제의 발굴·논의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
- (구성) 5개 전문위원회(창출·보호·활용·기반·신지식재산)
 -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15명 이내(위원장 포함) 구성(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위촉)
 - * 신진·중진급 실무 전문가의 균형적 안배, 해당 분야 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구성(산·학·연·법조·언론 등), 국과위 등 관련 기관과 인적연계 추진
 -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 분야 현장 경험 및 전문적 식견을 겸비하고, 위원회 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
 - * 전문위원회 별로 전문가 Pool(2배수) 구성(8월) 후 위촉 추진(9월)
- 운 영
 - 월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
 - * 전문위원회 구성 후, 위원회별로 논의 안건 및 구체적 일정 등 결정
 - 필요시 타 전문위원회 위원,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 제시(표결권한 없음)
 - 필요시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 개최

<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(예시)>

분 야	소관 정책 과제	공동 정책 과제
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식재산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 ◦ 산·학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◦ 표준·원천특허 창출 지원 방안 ◦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 방안 ◦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정비 방안 ◦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방안
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식재산 보호 제도 개선 방안 ◦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방안 ◦ 해외 지식재산 보호강화 방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식재산 투자 및 자원 배분 방안 ◦ 지재산 유사·중복 조정 및 연계 방안
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·중소기업 지식재산 공동 활용 방안 ◦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제고 방안 ◦ 지식재산 가치평가 합리화 방안 ◦ 지식재산 금융 선진화 방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방안 ◦ 지식재산 공정 이용 방안 ◦ 미래 성장산업 지식재산 전략 수립
기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확산 방안 ◦ 지식재산경영 인증 방안 ◦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방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식재산 표준 분류 체계 수립 ◦ 지식재산 통계 관리 체계 수립 ◦ 지식재산 홍보 전략 수립
신지식재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지식재산 현황 조사 및 분석 방안 ◦ 신지식재산 국제동향 대응 방안 ◦ 신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 강화 방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정규 교과 과정 내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방안 ◦ 지식재산 활용 개방형 혁신 촉진 방안

4

특별전문위원회

□ (의의) 지식재산 관련 긴급·중요한 현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시 한시적으로 특별전문위원회 설치 가능

□ 구 성

- 시급한 정책 과제 검토를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구성하고, 목적 달성 후 활동 종료

< 특별전문위원회 예시 >

①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혁 특별전문위원회

- (배경) 현행 지식재산 사법제도는 신속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
- (필요성) 글로벌 특허전쟁 확대, NPE의 특허공세 강화 등 지식재산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혁 방안 논의 필요

② 지식재산 동반성장 특별전문위원회

- (배경) 우리 중소·중견 기업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거나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역량 미흡
- (필요성) 글로벌 선진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중소·중견 기업에 전파하고 지식재산의 공동 활용 또는 휴면 특허의 이전 촉진 방안 논의

□ 향후 추진 일정(안)

-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수립(9월)

*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

- 특별전문위원회 위원·위원장(15명 이내) 위촉(10월~)

- 특별전문위원회 활동(2012년부터 활동 개시)

5

위원 참여 및 활동 방향

< 기본방향 >

- ◆ 유관 기관·단체·국민들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주도 및 논의 활성화
- ◆ 지식재산 분야의 다양한 현안 논의 및 문제해결의 창구 역할 수행
- ◆ 현지방문·사례연구 등을 통한 현장중심 활동 강화

□ 커뮤니케이션 주도 및 논의 활성화

-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정책 분야별 간담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과 관련 부처·단체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 활동 강화
- 다양한 미디어(신문기고, 보도자료, 기획보도 등)를 활용한 지식재산 정책 홍보, 대국민 홍보 캠페인, 공청회 등에 위원 참여를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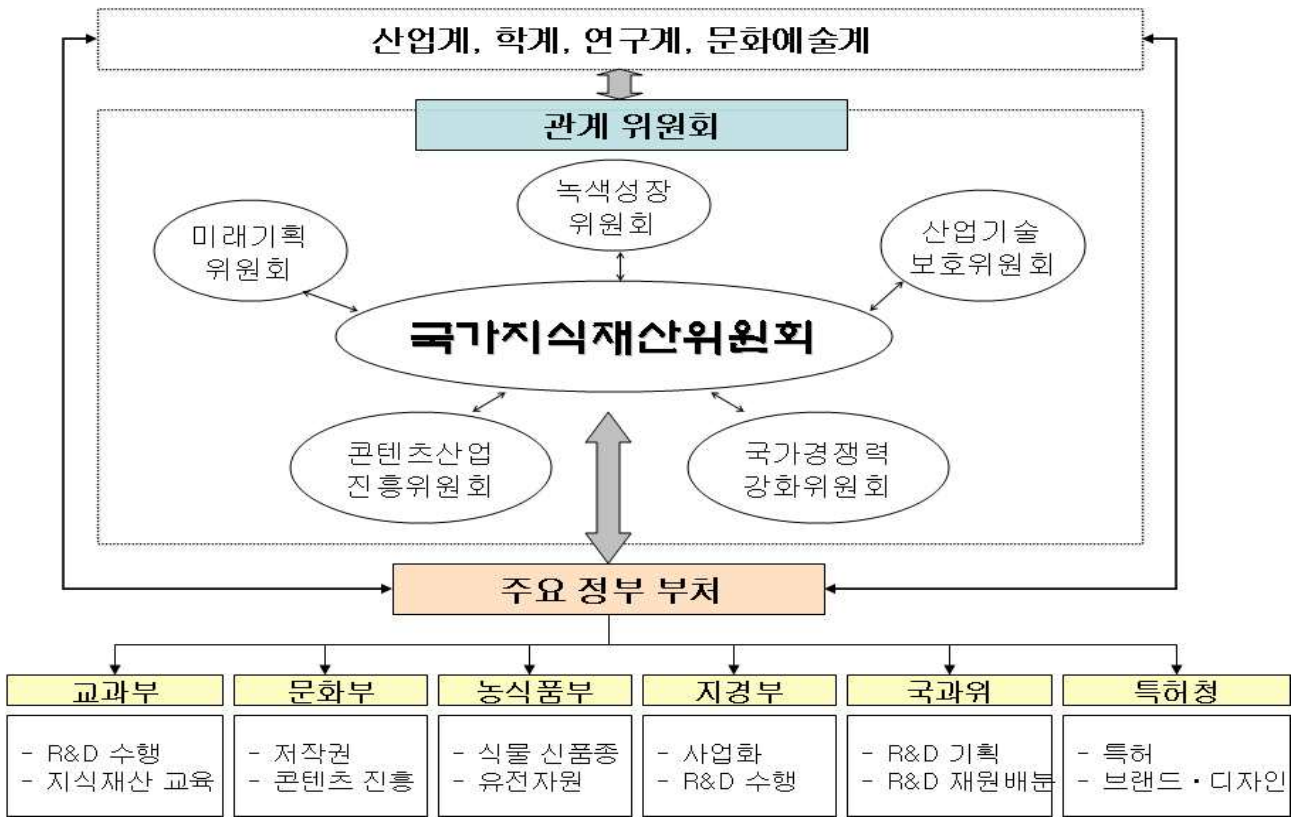
□ 현안논의 및 문제해결 창구 역할 수행

- 민간 우수사례 발굴·전파 및 애로사항 논의·해결책 도출 등을 통해 지식재산 전도사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
- 지식재산 관련 강연(관련 단체·지자체·기업 등)에 위원활동 지원을 통해,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지역·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

□ 현장 중심 활동 강화

- 위원 활동역량 강화, 현장성 보완 등을 위해 국내 지식재산 관련 현장방문(Field Trip) 실시 등
- 외국정부(미국, 일본, 중국 등), 국제기구(WIPO, WTO 등) 등 현지 방문(Study Visit), 국제행사 참여 등 국제 협력 활동 수행

<<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생태계 구성>>



<<분야별 유관 기관 및 위원회 주요 역할>>

구분	특허 생태계	저작권 생태계	신지식재산 생태계
정부 부처	교과부, 농식품부, 지경부, 국과위, 복지부, 국토부, 특허청 등	문화부, 방통위, 법무부 등	문화부, 농식품부, 복지부, 환경부, 문화재청, 특허청, 농진청 등
학계 · 연구계	산업재산권법학회, 지식재산학회, 국공립 연구원(EIRI 등), 공학한림원 등	저작권위원회, 콘텐츠진흥원, 저작권법학회, 정보법학회 등	한국중지연구회, 농업기술진흥재단, 국립중지원, 국립농업과학원 등
	이공계 대학(원), 법학전문대학원, 지식재산경영전문대학원, 산학협력단 등		
산업계	발명진흥회, 지식재산협의회, 지식재산서비스협회, 지식재산보호협회 등	음악저작권협회, 복사전송권협회, 문예학술저작권협회, 영상·음반·출판·공연 산업 등	한국중지협회, Bio·신약 산업, 지역브랜드 산업 등
	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무역협회,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, 한국경영자총협회 등		
주요 역할	①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개선 ② 과학기술자 지식재산 마인드 제고 ③ 기업 특허경영 지원	①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 ② 차세대·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 ③ 콘텐츠 분야 금융·투자 활성화	① 식물신제품 육성 및 생물자원 보존관리 강화 ② 전통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③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지원(지리적 표시)

Ⅲ 향후 추진 계획

□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: 9월 중

-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수립(8월)
- 전문위원회 위원·위원장 선정 및 위촉(9월)
- 분야별 쟁점 조정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월별 회의(9월 ~)

□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12~'16) 수립 : 9월 중

-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(8월)
- 제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·의결(9월)

* 제2차 회의는 현장성 강화를 위해 우수 지역지식재산진흥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공동 개최 추진

□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: 9월~

-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수립(9월)
- 특별전문위원회 위원·위원장 위촉(10월~)
- 특별전문위원회 활동(2012년부터 활동 개시)

□ 국가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: 11월 중

- (의의)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공감대 확산,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향후 운영 및 추진 방향 논의
- (시기)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추진

□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: 12월 중

- 부처별, 지역별 시행계획 취합(11월)
-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·의결(12월)

1. 법적 근거(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8조)

-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*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

* 실무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, 특별전문위원회

2. 운영세칙의 구성 및 주요 내용

- 논리적 흐름, 가독성(可讀性) 등을 고려하여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구성(총 5장, 17조)

◆ (제1장) 총칙, (제2장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(제3장)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(제4장)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, (제5장) 보칙

3.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**직무대행(안 제3조제2항)**

- 위원장(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)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,
 -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토록 함

 위원회 간사 규정(안 제3조제4항)

- 위원회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수행토록 함

*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차장이 그 직을 대행

 서면의결(안 제5조)

-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*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

*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

4. 산하 위원회 관련 사항

실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 및 제8조)

-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, 부처간 이견 협의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·운영(의결 기능 없음)
- (위원장) 국무차장, (위원) 당연직 위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(간사)으로 구성

* 필요시 전문위원,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

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지식재산 창출·보호·활용·기반, 신지식재산 5개 분야 설치
- 월1회 회의 개최 원칙, 전문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규정

*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위촉하며,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임명

* 전문위원 임기 2년(시행령 제6조)

특별전문위원회* 구성(안 제11조)

-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사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

* 지식재산 정책 관련 긴급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 필요시 한시적 구성·운영(시행령 제6조)

5. 기타 고려사항

대리참석(안 제3조제3항)

-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참석 가능(대리 출석자도 의결권 가짐)

지재위 및 산하위원회 위원 해촉(안 제6조, 제13조)

- 특별한 사유 발생 또는 불성실한 태도 등의 경우 해촉 가능

* 질병·사고 등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, 이해관계자를 대변, 고의로 회의진행 방해, 불성실한 참여 등 / 위원 해촉시 후임자를 정하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

제정 2011. 7. 28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와 실무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(이하 “산하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국무총리와 제2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과학기술부장관, 외교통상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지식경제부장관, 국무총리실장, 국가정보원장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, 특허청장
2.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

제3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, 제2조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(이하 “당연직 위원”이라 한다)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(이하 “고위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.

④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. 다만,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차장이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·장소
2.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
3. 상정된 안건명 및 심의결과
4. 기타 주요 논의 사항

제4조(안건의 제출)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 할 수 있다.

②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이나 안건의 성격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위원회 간사가 제출한다. 이 경우 위원회 간사는 안건을 작성하고 발표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기구에 안건을 제출 할 수 있으며, 제출 안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조(서면의결)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

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② 서면의결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, 모사전송,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 등) ①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,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해당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.

② 민간위원이 질병, 사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(前任)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3장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제7조(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실무운영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국무차장이 된다.

②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영 제14에 따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 구성된다.

③ 실무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이 된다.

④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이 실무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실무운영위원회 회의) ① 실무운영위원회 회의는 실무운영위원장이 주재한다.

②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실무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
③ 실무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직하위(直下位)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.

④ 실무운영위원회 회의는 실무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이 상정안건에 대해 보고를 한 후, 실무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안전을 검토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하위 직급의 공무원이 안전을 보고할 수 있다.

⑤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문서로 정리하여 관리해야 한다.

제4장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

제9조(전문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
2.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
3.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
4.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
5.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

제10조(전문위원회의 회의)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전문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전문위원회를 주재한다.

② 전문위원회는 월별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문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④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전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전문위원장은 타 전문위원회 위원, 전문가 등이 표결권한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.

⑦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문서로 정리하여 관리해야 한다.

제11조(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장은 영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사안의 특수성과 전

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12조(합동회의) ①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 및 종합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동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합동회의의 의장은 참여하는 전문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합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합동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전문위원의 해촉 등) ①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,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전문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에게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이 질병, 사고 등으로 전문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 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4조(운영지원)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서 담당한다.

제15조(수당과 여비) ①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,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서면의결에 참여한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등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, 안전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서면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실무사항)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7조(운영세칙 개정)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

부 칙

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서면의결서

- 회의명 : 제 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
- 부의일시 :
- 서면결의사유 :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

(서명)

국가지식재산위원장 귀하